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99
----------	-------

발의연월일 : 2023. 12. 13.

발 의 자 : 유경준 · 구자근 · 김학용
한무경 · 박성중 · 이 용
정우택 · 권성동 · 이용호
박정하 · 양금희 · 노용호
전봉민 · 장동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등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확산되고 있음. 특히 결승전 등 중요 경기의 경우,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은 정도로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입장권 등의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암표 매매 단속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홍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표 판매 행위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압표 판매 행위만을 전제하고 있어 온라인 압표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연 온라인 압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이와 같은 입법례에 따라,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스포츠 경기에 대한 온라인 압표행위를 규제할 타당성이 인정됨.

이에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압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제14조의5, 제49조의2제2호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관람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관람권에 준하는 증서(이하 “관람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관람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람권등을 상습 또는 엽엽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람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람권등을 판매하는 자·관람권등 판매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람권 판매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부정판매 금지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관람권등의 검표방법, 부정판매 확인 시 입장·예매 취

소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 중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5(관람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관람권에 준하는 증서(이하 “관람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관람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람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람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관람권등을 판매하는 자·</u>

제49조의2(벌칙) <u>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신 설></u> <u><신 설></u>	관람권등 판매를 수탁받은 자(이하 “관람권 판매자”라 한다)는 <u>제1항 및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부정판매 금지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u> ④ <u>그 밖에 관람권등의 검표방법, 부정판매 확인 시 입장·예매 취소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u> 제49조의2(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u> <u>-----.</u> 1. <u>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u> 2. <u>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u>
---	---